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춘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94

발의연월일: 2021. 11. 3.

발 의 자:최춘식·구자근·김기현

김형동 · 김희곤 · 안병길

윤영석 · 윤창현 · 이명수

정희용 · 지성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어업인·임업인과 회원 조합을 위해 구매·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·보 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.

반면,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·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구매·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농협경제지주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취득세·재산세 25% 감면 제도를 적용함(안 제1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업협동조합중앙회"를 "농업협동조합중앙회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했

제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 회가 구매・판매 사업 등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(「농수산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」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 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 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하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개 정 안

세14조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
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
① <u>농업협동조합중앙회(「농업</u>
협동조합법」 제161조의 2에
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
<u>를 포함한다)</u>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